

# 대출계약 철회신청서

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귀하

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(청약의 철회)에 따라 신청인(본인)은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합니다.

## ■ 고객 정보

신청일	20	년	월	일
성명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	
주소				
연락처				

※ 일반금융소비자(개인 및 개인사업자, 5인 미만 법인 등)만 대출계약 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 ■ 대출계약 내용

대출실행일	20	년	월	일
금융상품명칭				
대출금액				
청약철회신청기간	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, "금전·재화 등"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			

※ 대출계약의 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(청약의 철회)에 의해 철회가능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,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※ 대출계약 철회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
※ 일부 대출상품(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·할부금융·연불판매 등)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(청약의 철회)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약의 철회가 제한됩니다.

대출계약철회권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신청인

(인/서명)